

## 대학원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내규

- 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 「대학원 학칙」 제3조(학위과정)에 의거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**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(이하 “통합학위과정”이라 한다.)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,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석·박사학위과정의 계속 수학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.
- 제3조(설치대상)**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 설치할 수 있다.
- 제4조(입학자격)** 통합학위과정 입학자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5조(선발시기 및 인원)** 통합학위과정의 선발시기 및 인원은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제5조1항에 의거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6조(입학전형)**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제2장에 의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.
- 제7조(수업연한)** 통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4년으로 하되,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.(개정 2021. 9. 27.)
- 제8조(재학연한)** 통합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2조제3항에 의거 6년으로 한다.
- 제9조(학점취득)** ① 통합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.  
② 통합학위과정 학생 중 선수과목에 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을 따른다.  
③ 「대학원 학칙」 제25조제2항에 의거 통합학위과정 4학기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의 수강 능력에 따라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학점인정)** 통합학위과정의 학점인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1조제5항에 의거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1. 9. 27.)
- 제11조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**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5회 이상 정규등록한 재학생 중 학위청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1학기 이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자격시험)**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은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제9장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.  
② 졸업시험은 6회 이상 등록을 하고 60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.(개정 2021. 9. 27.)
- 제1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)**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33조에 의거한다.
- 제14조(통합학위과정 포기자의 학위과정 변경)** 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「대학원 학칙」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22. 9. 1.)  
② (삭제 2022. 9. 1.)
- 제15조(박사과정 인정)** ①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.  
②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

발급한다.

**제16조(학사관리)** 교육과정 이수,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등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.

**제17조(세부사항)**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,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'규정류'로 제정되었음

### <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>

1.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개정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3. 이 개정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